

울산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157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157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1194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6. 27.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11947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소외 회사에,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12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12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회사는 2017. 5. 2.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5. 2.까지 재직하였다. 피고들은 자매 사이로, 그 아버지 D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경영자이다.

나.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소외 회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비사업용 토지인 울산 울주군 E 대 3,825.8㎡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울산세무서장은 2020.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과세표준 1,228,311,200원, 납부세액 154,122,347원(=미납세액 122,831,120원 + 과소신고 가산세액 12,283,112원 + 미납부 가산세액 19,008,115원), 납부기한 2020. 12. 31.로 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7.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179,552,390원이다(이하 체납된 위 법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각 부동산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2022. 3. 14. 주식회사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4. 23. 약정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피고 A에게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1285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128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매매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소외 회사의 무자력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행위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약 2억 원을 대여하였고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실질은 소외 회사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외 회사에 대한 2018년 귀속 법인세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 12. 31.에 성립하였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2022. 2. 23.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유일한 적극재산인 위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매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실질은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고, 특별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설정은, 판사 유진현

별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1호증, 2024. 5. 20.자 피고 준비서면).